

‘25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[제1차] 정기공고

해외 현지 진출(예정) 중소·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 보호 및 지재권분쟁·침해 초동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2. 28.

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
1. 사업개요

총괄 / 주관기관: 특허청 / 한국지식재산보호원

사업목적

- 해외 진출(예정) 중소·중견기업 대상으로 지재권 권리보호 및 해외기업과의 현지 분쟁·침해 초동대응 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
 - 1) 「중소기업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 - 2)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

지원대상

-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,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(예정)* 중소·중견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
 - * 사업 신청 시 대상제품 수출여부 항목은 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단계를 기준으로 입력하여야 하고, 수출단계 증빙에 지원 희망국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수출증빙 인정 불가(수출단계 판단기준은 5페이지 유의사항 참조)

□ 지원대상국가: 해외지식재산센터(10개소) 관할 총 40개 국가

| 해외 IP센터 | 로스앤젤레스 | 워싱턴 D.C. | 베이징 | 광저우 | 일본 | 유럽 | 호치민 | 방콕 | 뉴델리 | 멕시코시티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국가 (40개국) | 미국 서부, 캐나다 | 미국 동부 | 중국 북부지역, 몽골 | 중국 남부지역 (홍콩, 마카오, 대만) | 일본 | 독일, 영국, 프랑스, 스페인, 러시아, 이탈리아, 투르키예, 스위스, 네덜란드, 스웨덴 | 베트남, 필리핀, 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 | 태국, 인니, 말레이시아, 캄보디아, 미얀마 | 인도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, UAE, 사우디, 카자흐스탄, 이집트 | 멕시코, 브라질, 칠레, 페루, 아르헨티나, 콜롬비아, 에콰도르 |
| | 2개국 | 3개국 | 1개국 | 10개국 | 5개국 | 5개국 | 7개국 | 7개국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

2. 지원 내용

□ 세부 유형별 지원 내용

○ 권리보호 지원

- 현지에서 특허 · 상표 · 디자인 출원 시 발생 비용 및 절차 지원(기술 출원 건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, PCT·마드리드·헤이그 국제단계 지원은 불가하나 개별국 진입단계는 지원 가능)
 - * 상표·디자인은 1국가 · 1표장 · 1상품류를 1건으로 취급하며, 국가, 표장, 상품류 추가 시 각각 개별 신청 필요(첨부된 니스(상표)/로카르노(디자인) 분류표를 참조하여 상품류 및 지정상품 지정 필수)
 - ** 특허출원 신청 시 지원 희망국가 언어/법적요건을 갖춘 명세서 제출 필수
-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

| 지원 내용 | 정부지원금 지원한도(건 최대) | | 정부지원비율 | 비고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■ 특허·상표·디자인출원 비용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·상표·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(관납료 포함) ■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| 특허 | ~\$3,000* | (중소) 50% (중견) 50% | ▶연간 10건/1社 총 \$5,000 한도 |
| | 상표, 디자인 | ~\$2,000* | | |

* 권역·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('붙임1' 참조)
(지원한도는 총 계약금액이 \$6,000일 때 50%인 \$3,000까지 지원을 의미)

○ 분쟁 · 침해 초동대응 지원

- (지재권침해피해)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침해 증거 확보*, 지재권 침해 물품 제조·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지원
 - * 경고장·소송 제기가 목적일 경우는 지재권분쟁 유형 신청 필요
- (지재권분쟁)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, 감정서(FTO 등) 등 작성 · 검토 지원
- (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)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

| 지원 내용 | 정부지원금 지원한도(건, 최대) | 정부지원비율 | 비고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(지재권침해피해) 현지 지재권 피 침해 실태조사(기본), 행정단속(추가)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지원 ■ (지재권분쟁) 경쟁사 분쟁성향, 분쟁대상 권리·제품 심층 분석, 신규 네이밍(상표) 전략 등 지원 ■ (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) 비밀유지 협약서(NDA), 합의서,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| ~\$10,000 | (중소) 70% (중견) 50%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간 2건/1社, 총 \$20,000 한도 ▶ 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 시 \$6,000 한도 ▶ 행정단속만 단독 지원은 불가 |

* 동일 사항(동일 제품·권리의 동일 내용·분쟁상대방 등)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

○ 심층 법률자문 지원(무료)

- 지재권 법률 검토, 권리 피침해 여부,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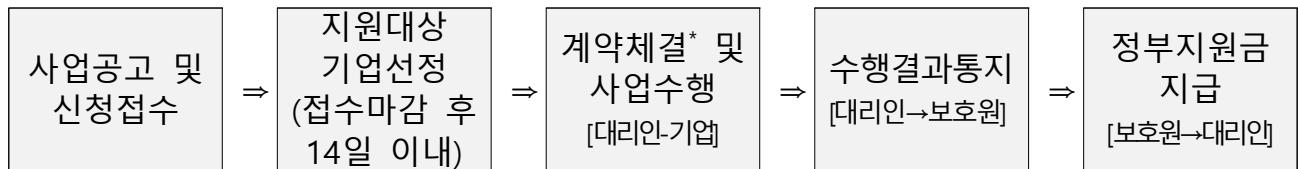
| 지원 내용 | 지원한도(건, 최대) | 정부지원비율 | 비고 |
|---|-------------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초상담 이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층 자문 제공 | | 전액 지원 (중소·중견 100%) <small>* 단, 연 5회를 초과하여 자문 요청시 타 기업 우선 지원</smal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이 지원 |

□ 수행대리인 선정방법

-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(별첨1, 시스템 참조)^{*}내 해당 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수행 여부, 비용견적 등 세부 사항 협의(필수)^{**}
 - * 수행대리인POOL 외 대리인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원 문의
 - ** 직접 문의가 어려운 경우 해외IP센터(붙임2)에 수행대리인 정보 문의 가능
- 기업과 수행대리인 간 상기 비용견적 등 협의가 완료되면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에서 사업신청 시 해당 수행대리인을 지정
-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되지 않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 전에 해외지식재산협력실로 개별 문의 요망
 - * 비등록 수행대리인은 별도의 심사절차(대리인등록신청서 제출)를 통해 수행대리인 POOL에 등록할 수 있으며, 선정여부 통보는 해당 대리인의 등록신청일부터 10여일 소요

□ 지원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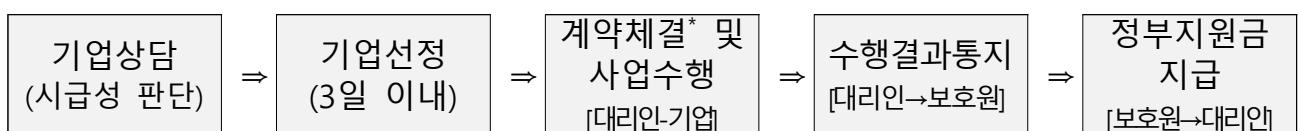
- (정기모집) 권리보호, 분쟁·침해 초동대응 공통 적용



*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(증빙자료 개별 제출)
(계약 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)

- (수시모집) 분쟁·침해 초동대응이 시급한 사항(패스트트랙 적용)

-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가 기업과 상담을 통해 시급성을 우선 판단하고,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

*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시 수행대리인에 기업부담금 입금(증빙자료 개별 제출)
(계약 시점에서 기업부담금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수행대리인의 요구 보증금으로 대체 가능)

- 심층 법률 자문은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에 유선으로 직접 신청접수

3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 기간

○ 정기모집

- 신청 기간: '25. 3. 4.(화) ~ 3. 25.(화), 18:00

* 마감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제출 완료 및 시스템상 최종 제출되어야 인정됨

- 결과 통보: 모집 완료 후 14일 이내(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○ 수시모집(패스트트랙, 분쟁 · 침해 초동대응유형만 신청가능)

- 신청 기간: 상시*

* 반드시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서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판단받아야 지원대상으로 선정 가능

- 결과 통보: 접수 후 3일 이내(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
□ 신청 방법

- 정기모집은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(www.ip-navi.or.kr/ipcenter)에서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
- 수시모집을 신청하는 경우 해외지식재산협력실(1600-9099) 또는 해외IP센터(붙임2 참조)*와 반드시 사전상담 필요

<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>

- 2개 이상의 국가·권리에 대한 출원지원 신청 등의 경우 시스템 상에서 반드시 각각의 권리·국가별로 신청 필요(1개의 신청서에 국가·표장·상품류 미기재 또는 복수 기재 시 불선정)
- 선정 이후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 희망국가/상품류* 변경은 불가하나 지정상품은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

■ 수출단계 판단기준

- **수출 중:** 지원 희망국이 표기된 수출실적증명서·수출신고필증, 지원 희망국 내 지사 운영, 지원 희망국 온·오프라인 판매내역 및 셀러 자격, 지원 희망국 판매 인보이스 등이 증빙 가능한 경우
- **수출 계획·준비 중:** 지원 희망국 수출 계획서, 지원 희망국 전시회 참가, 영문/희망국 언어로 작성된 브로슈어, 지원 희망국 내 지재권 출원·등록, 지원 희망국 수출을 위한 국내·외 기업과의 업무협의자료(이메일 등) 등이 증빙 가능한 경우
- **수출 계획 없음:** 수출 중 또는 수출 계획·준비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인정된 경우

[정기모집 시 기업 제출서류]

| 구분 | 제출서류명 | 필수 | 해당시 | 제출방법 |
|---|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
| 기업 제출서류 | 1. 해외지재권종합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및 사업 신청서 | ○ | |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|
| | 2. 기업규모 증명서(중소, 중견) * 유효기간 확인 필수(24.2.28. 이후) | ○ | | |
| | 3. 사업자등록증(명원) | ○ | | |
| | 4.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·준비 증빙 자료 | | ○ | |
| | 5.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·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(원부) 또는 출원증명원(공고)/ 해외등록권리 증빙 | | ○ | |
| | 6. 국세납세증명서 * 유효기간 확인 필수 | ○ | | |
| | 7. 지방세납세증명서 * 유효기간 확인 필수 | ○ | | |
| | 8. 사업 신청 유형 관련 증빙자료 *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, 지재권침해 증빙, 경고장 ·소장, 지원 희망국가 언어/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,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·갱신 요청 등 | | ○ | |
|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(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) | | | | |

4. 세부운영계획

□ 선정기준 및 선정평가 결과

- (선정기준) 내·외부 심사위원*이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모집 회차별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기업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
 - * 수시모집의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내부 심사위원으로 심사 진행
 - ** 선정심사기준: 붙임3 참조
- (결과확인) 회원정보에 기재된 이메일로 심사결과 통보하며 해외 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 상의 ‘지원기업 계약관리’에서도 확인 가능

□ 지원기업-수행대리인 간 계약 체결

- 지원기업은 선정결과 발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수행대리인과 계약체결 실시(일정 도과 예상 시 반드시 보호원으로 사전연락 필요)

-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은 계약 조건*, 계약 기간** 및 과제비용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, 해외지재권종합지원시스템상에서 전자계약서 작성

* 출원 요청 건수, 행정단속 포함여부 및 최종결과물 구성 등

** 지원기업과 수행대리인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함

- 지원기업은 수행대리인과 계약서 날인 및 기업부담금을 수행 대리인에게 입금(정해진 기한 내 미납부시 선정 취소 가능)

- 지원기업은 계약 체결 이후 지원사업 시스템에 기업부담금 입금 증빙자료 업로드(별도 안내 메일 발송 예정)

□ 사업결과 확인 및 정부지원금 지급

- 수행대리인이 사업수행 완료*시 지원기업 및 보호원에 통지하고, 보호원은 사업결과 내용을 확인 후 수행대리인에게 정부지원금 지급
* 지원기업에서 미동의 시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정부지원금 지급여부 결정
- 수행대리인은 반드시 지원기업 선정 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업 완료 필요(미완료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)

□ 유의사항

- 계약 체결 이후라도 지원제한 조건 사유 해당, 신고요건 위반사항, 기타 심각한 신의성실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 거절 가능

□ 문의처

- 대표번호/이메일: 1600-9099, ipcenter_help@koipa.re.kr
- 해외IP센터 10개소 연락처는 ‘붙임2’ 참고

- [붙임]
1. 국가별 지원한도
 2. 해외IP센터 연락처
 3. 선정심사 기준
 4. 지원제한 조건

- [별도파일]
1. 수행대리인POOL 리스트
 2. 니스, 로카르노 분류표

붙임1

권역·국가별 지원한도

| 권 역 | 국 가 | 지원한도(USD), 건당 |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상표 | 디자인 | 특허 |
| 북 미 | 미국 | 700 | 1,500 | 2,500 |
| | 캐나다 | | | |
| 중남미 | 멕시코 | 400 | 450 | 750 |
| | 브라질 | | | |
| | 칠레 | | | |
| | 아르헨티나 | | | |
| | 콜롬비아 | | | |
| | 페루 | | | |
| 동북아 | 에콰도르 | 500 | 500 | 1,500 |
| | 일본 | | | |
| | 중국 | | 300 | 1,000 |
| | (마카오) | | | |
| | 대만 | | 400 | 1,000 |
| | (홍콩) | | 650 | 1,200 |
| 동남아/오세아니아 | 몽골 | 500 | 800 | 1,300 |
| | 베트남 | | 500 | 1,500 |
| | 필리핀 | | 500 | 1,500 |
| | 호주 | | 1,500 | 2,000 |
| | 뉴질랜드 | | 1,500 | 2,000 |
| | 싱가포르 | | 450 | 1,500 |
| | 태국 | | 700 | 1,500 |
| | 인도네시아 | | 600 | 1,500 |
| | 말레이시아 | | 500 | 1,500 |
| | 캄보디아 | | 500 | 1,500 |
| 서남아/중동 | 미얀마 | 400 | 500 | 1,500 |
| | 인도 | | 200 | 1,500 |
| | 방글라데시 | | 200 | 1,500 |
| | 파키스탄 | | 200 | 1,500 |
| | UAE | | 1,000 | 3,000 |
| | 사우디아라비아 | | 1,000 | 3,000 |
| | 카즈흐스탄 | | 200 | 1,500 |
| 유럽 | 이집트 | 300 | 200 | 1,500 |
| | 유럽통합 | | 1,000 | 2,500 |
| | 독일 | | | |
| | 영국 | | | |
| | 프랑스 | | | |
| | 스페인 | | | |
| | 스위스 | | | |
| | 이탈리아 | | | |
| | 네덜란드 | | | |
| | 튀르키예 | | | |
| | 스웨덴 | | | |
| | 러시아 | | | |

붙임2**해외IP센터별 연락처**

| 센터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로스앤젤레스 IP센터 | +1-323-424-4005 | la_ipcenter@koipa.re.kr |
| | 070-5150-2844 | |
| 워싱턴 D.C. IP센터 | +1-571-459-2501 | washington_ipcenter@koipa.re.kr |
| | 070-5150-2832 | |
| 베이징 IP센터 | 070-5150-2818(2814) | beijing_ipcenter@koipa.re.kr |
| 광저우 IP센터 | +86-20-2208-1510 | guangzhou_ipcenter@koipa.re.kr |
| | 070-5150-2804(2806) | |
| 일본 IP센터 | +81-3-6362-0500 | tokyo_ipcenter@koipa.re.kr |
| | 070-5150-2787 | |
| 유럽 IP센터 | +49-69-5050-346-30 | frankfurt_ipcenter@koipa.re.kr |
| | 070-5150-2782 | |
| 호치민 IP센터 | 070-5150-2779(2781) | hochimin_ipcenter@koipa.re.kr |
| 방콕 IP센터 | 070-5150-2754(2774) | bangkok_ipcenter@koipa.re.kr |
| 뉴델리 IP센터 | +91-11-4230-6300 | newdelhi_ipcenter@koipa.re.kr |
| | 070-5150-2753 | |
| 멕시코시티 IP센터 | +52-55-5920-2730 | mexicocity_ipcenter@koipa.re.kr |
| | 070-5150-2746 | |

붙임3

선정 심사기준

□ (1단계)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 → 미충족시 지원대상 탈락

- 수출 또는 수출예정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
- 지원 제한조건(별첨2 참조)에 해당하지 않고, 당해연도 최대 지원 건수 범위 이내일 것

□ (2단계) 지원기업 선정평가 기준 → 고득점순 우선 지원대상 선정

| 평가항목 | 평가 항목 | 배점 | 평가기준 및 점수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기업 규모 | 중소, 중견 기업 구분 | 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(소기업) 20점, (중기업) 15점, (중견기업) 10점 |
| 지원 항목 | 지원 신청 배경 및 수혜 이력 | 2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분쟁침해 초동대응 지원: 5~10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해외 IP침해분쟁(경고장 접수, 침해피해 등) 대응 법률서비스: 10점· 해외 IP침해·분쟁 예방 법률서비스: 5점· 해외 수출 관련 법률서비스(라이선스 계약, NDA, 지재권 관련 내용 검토 등): 5점■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: 5~10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(상표·디자인 10, 특허 5, 세관 등록 5,)■ 법률서비스 수혜 이력: 0~5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신청연도 및 직전 2년 이상 해외IP센터 지원(법률서비스, 출원) 실적이 없는 경우: 5점· 신청연도 및 직전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(법률서비스, 출원)실적이 없는 경우: 3점· 신청연도에 해외IP센터 지원실적이 없고, 그전에 지원실적이 있는 경우: 0점 |
| 수출 기여 | 실제 수출 여부, 수출 계획의 구체성 등 | 15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법률서비스 신청국가에 대한 해외 현지 수출실적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: 15점■ 수출 실적이 명확하지 않으나 수출 예정이거나 수출계획이 구체적인 경우: 10점■ 수출실적도 명확하지 않고, 수출여부도 불명확한 경우: 0점 |
| 지원 적합성 | 기업 활동과 지재권의 관련성 및 지원시기 적정성 등 | 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기업의 영업활동과 지재권의 관련성,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: 10점■ 현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시기 적절성, 시급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: 10점 |
| 지원 효과성 |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및 경쟁력 향상 등 예상 성과 | 2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지원 결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, 경쟁력 제고, 사업활동 안정성, 분쟁예방 등에 대한 정성적 평가: S(20), A(15), B(10), C(5) |
| 총 계 | | 100 | |

※ '심층 법률자문'은 '(1단계) 지원기업 적격여부 사전심사'만 통과하면 신청순으로 모두 지원. 다만, 신청이 많은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이 지연될 수 있음

지원제한 조건

- 휴·폐업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. 단, 금융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.
-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의 개인인 경우
-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외국에 설립한 법인·지점·사무소(이하 ‘한국기업 지사’ 라 함) 또는 투자지분이 높은 법인인 경우
-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신청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
- 사업 지원으로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
- 기타 지원사업이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
- 신청 기업이 타인의 상표, 특허 또는 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. 다만, 타인과 신청 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제외함
- 종전(최근 3년)에 지원받은 사항과 동일 사안의 신청인 경우